##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039

발의연월일: 2021. 3. 23.

발 의 자: 송언석 · 윤창현 · 임이자

김성원 • 태영호 • 허은아

김정재 · 권명호 · 박덕흠

정희용・구자근・조수진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초경량비행장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드론에 대하여 현 정부는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레저스포츠, 드론을 활용하는 신사업 개발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, 방재, 교통단속, 재난·재해 대응 등에 활용되고 있음.

다만, 초경량비행장치 수요 증가에 따른 기체신고, 사업의 등록, 사업체 안전관리 등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당인력과 기관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초경량비행장치와 항공레저스포츠를 활용하는 사업의 등록・변경・양도・양수・합병・상속・휴업・폐업 등의 신고 및 사업개선 명령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도록 하고, 전국에 분포된 공단의 지역본부를 활용하여 고객들의 서비스 접점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(안 제75조제5항 신설 등).

##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"한국교통안전공단"이라 한다) 또는 항공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있다.
- 1.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업무로서 제48조제1항, 제49조제 1항 및 제4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신고 수리 및 사업개선 명령 등에 관한 업무
- 2. 항공레저스포츠사업(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거나 초경량비행장 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한정한다)에 대한 업무로서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 수리 및 사업개선 명령 등에 관한 업무

제7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7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임직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	제7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
	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바에 따라 「한국교통안
	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
	전공단(이하 "한국교통안전공
	단"이라 한다) 또는 항공 관련
	<u>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u>
	1.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
	대한 업무로서 제48조제1항,
	제4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
	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신고
	수리 및 사업개선 명령 등에
	관한 업무
	2. 항공레저스포츠사업(초경량
	비행장치를 이용하거나 초경
	량비행장치에 대한 서비스를
	제공하는 사업에 한정한다)에
	대한 업무로서 제50조제1항
	및 제51조제2항부터 제6항까
	지에 따른 신고 수리 및 사업
	개선 명령 등에 관한 업무

제762	조(벌칙	적	용에/	서 공	무원	의
제)	다음	각	호의	어느	하1	나에
해도	당하는	사	람은	「형티	빌	제1
292	조부터	제	132조	까지	의 -	규정
을	적용할	ł u	대에는	: 공모	구원.	으로
본다	7.					

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제76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
제)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7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
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
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
는 항공 관련 기관・단체 등

의 임직원